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63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정일영·안도걸·박홍배

윤건영 • 허종식 • 김한규

한민수 · 안규백 · 민형배

한준호 · 양문석 · 전진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인구절벽을 막고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현행법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가진 거주자의 자녀에 대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와 육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를 두어 자녀 양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72명이고, 향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이로부터 파생될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처하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등).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4(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산장려금 (이하 이 조에서 "출산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 장려금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104조의32"를 "제104조의32, 제104조의3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4조의32"를 "제104조의32, 제104조의34"로 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

04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104조의34(출산장려금을 지급
	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u>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출산장려금(이하 이 조에서
	"출산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
	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의 10
	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
	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u>야 한다.</u>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①
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	
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	
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	
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	
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	

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 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 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 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 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 칙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 12조의4(종전 제37조의 개정규 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 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 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 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 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 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 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 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u>স</u>
104조의32, 제104조의34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 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 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 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 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 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 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 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 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 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 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 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 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 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 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 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②
<u>제1</u>
04조의32, 제104조의34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	
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